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9 년 12 월 31 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
(영문명) Woori Asset Trust
(홈페이지) <http://www.wooriat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, 20층
(전 화) (02) 6202-3000

대 표 이 사 : 이 창 하  이 창 재 
담 당 임 원 : (직 책) 경영지원본부장
(성 명) 이 동 구 (전 화) (02) 6202-3140

작 성 자 : (직 책) 차장
(성 명) 이 유 현 (전 화) (02) 6202-3067

제 출 이 유 :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, 「동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 및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6-7호)

최대주주 변경

1. 변경내용	변경 전	최대주주명	유재은 외 특수관계인
		소유주식수(주)	2,010,600
		소유비율(%)	86.64%
	변경 후	최대주주명	(주)우리금융지주
		소유주식수(주)	1,560,000
		소유비율(%)	67.22%
2. 변경사유		지분인수를 통한 자회사 편입	
3. 지분인수목적		비은행 부문 계열사 인수를 통한 역량 강화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	
- 인수자금 조달방법		보유자금으로 조달	
- 인수후 임원 선·해임 계획		2019.12.30.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 선임 완료 (사임 포함)	
4. 변경일자		2019. 12. 30.	
5. 변경확인일자		2019. 12. 30.	
6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- 상기 '1.변경내용 - 변경후 소유주식수'는 유재은 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차 취득한 주식(1,360,000주) 및 우리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주식(200,000주) 합산 기준임 - '상기 '1.변경내용 - 소유비율'은 본 공시 기재방법에 의거, 자사주(738,000주)를 산정 제외한 기준임 - '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'는 2019. 12. 30.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'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'로 사명이 변경됨	

【세부변경내역】

성명(법인)명	관계	변경 전		변경 후		비고
		주식수(주)	지분율(%)	주식수(주)	지분율(%)	
(주)우리금융지주	변경 후 최대주주	-	-	1,560,000	67.22%	
유재은	변경 전 최대주주	1,704,600	73.46%	650,600	28.04%	
유재영	변경 전 최대주주	306,000	13.19%	-	-	
(주)우리은행	변경 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	200,000	8.62%	-	-	
기타		110,000	4.74%	110,000	4.74%	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최대주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.
- 주2) “최대주주명”란에는 최대주주 본인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수를 기재한다.
- 주3) “소유주식수”는 변경전·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의 소유주식수를 각각 기재한다. 이 경우 「상법」 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및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(신탁계약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포함)은 소유주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.
- 주4) “소유비율”은 변경전·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의 소유주식수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(「상법」 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)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한다.
- 주5)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등으로 인하여 종전 2대주주등이 추가적인 지분 취득 없이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“3. 인수목적(인수자금 조달방법, 인수후 임원 선·해임 계획 포함)”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관련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.
- 주6) 【세부변경내역】은 변경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 및 변경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의 지분변동내역을 모두 기재한다. 이 경우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지분변동내역 산정에서 제외한다.
- 주7) “관계”는 변경전 최대주주, 변경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, 변경후 최대주주 또는 변경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, 변경전·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“비고”란에 최대주주와의 구체적인 관계를 기재한다.
예시) 최대주주 홍길동의 배우자
- 주8) 변경후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당해 최대주주의 재무상태(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, 자산총액, 부채총액, 자본총액 등) 기타 변경후 최대주주 관련사항 등을 기재한다.
- 주9) 상기사항 외의 최대주주변경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